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4. 1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4. 10
- 다. 상 정 일 자 : '97. 4. 17
(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재무과장 정 부 응
- 나. 제안사유
 -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중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수정과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키 위함.
- 다. 주요내용
 - 제7조중 "종료"를 "까지"로 개정하고 제11조와 제14조 4를 삭제,
 - 제18조 제1항중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물품관리관은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로서"로 하고 동조례 제2항중 "지정하는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개정
 - 제24조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제32조중 "전일로서"를 "전일"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변경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끝.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50
----------	---------

제출 년월일 : 1997. 4. 10.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조례의 관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정비

2. 주요골자

가. 연도의 구분 (조례 제7조 제1항)

-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

나. "기증품의 취득 및 기부금품의 평가액" 조항 삭제 (조례 제11조 제14조 4호)

다. 불용품의 폐기 (조례 제18조 제1항 제2항)

-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물품관리관은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 조서"로 개정
- "지정하는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개정

라. 물품출납원의 장부 (조례 제24조 제2항)

- 소모품 대장을 삭제

마. 인계의 절차 (조례 제32조)

- "전일로써"를 "전일로" 개정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에 종료한다"를 "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중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물품관리관은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조서"로 한다.

제18조중 제2항중 "지정하는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

제32조중 "전일로서"를 "전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p>	<p>제7조 (연도구분) ① - - - - - - - - - - 까지로 한다.</p>
<p>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청.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14조 (물품의 가격)</p> <p>1. ~ 3. (생략)</p> <p>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p> <p>5. ~ 7. (생략)</p>	<p>제14조 (물품의 가격)</p> <p>1. ~ 3. (현행과 같음) (삭 제)</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p>	<p>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 조서</p>

신. 구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p>	<p>-----</p> <p>-----</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u>입회하에</u> 하여야 한다.</p>	<p>② -----</p> <p><u>담당공무원</u> -----</p> <p>-----</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p>	<p>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p>
<p>①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u>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u>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p>	<p>② -----</p> <p>----- <u>비품출납 및 운영카드,</u></p> <p><u>도서대장</u> -----</p> <p>-----</p> <p>-----</p> <p>-----</p> <p>-----</p> <p>-----</p> <p>-----</p> <p>-----</p> <p>-----</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2조 (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p>	<p>제32조 (인계의 절차) -----</p>
<p>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u>전일로서</u>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로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p>	<p>----- <u>전일로</u></p> <p>-----</p> <p>-----</p> <p>-----</p> <p>-----</p>